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9. 3. 20.>

(앞쪽)

사업연도	. . . ~ . . .	최저한세조정계산서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

① 구분		코드	② 감면 후 세액	③ 최저한세	④ 조정감	⑤ 조정 후 세액
⑩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		01				
소득조정금액	⑩2 익금산입	02				
	⑩3 손금산입	03				
⑩4 조정 후 소득금액(⑩1+⑩2-⑩3)		04				
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	⑩5 준비금	05				
	⑩6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	06				
⑩7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(⑩4 + ⑩5 + ⑩6)		07				
⑩8 기부금 한도초과액		08				
⑩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		09				
⑪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(⑩7 + ⑩8 - ⑩9)		10				
⑪1 이월결손금		11				
⑪2 비과세소득		12				
⑪3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		13				
⑪4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·손금산입		14				
⑪5 차가감소득금액 (⑩0 - ⑪1 - ⑪2 + ⑪3 + ⑪4)		15				
⑪6 소득공제		16				
⑪7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		17				
⑪8 과세표준금액 (⑪5 - ⑪6 + ⑪7)		18				
⑪9 선박표준이익		24				
⑫0 과세표준금액(⑪8 + ⑪9)		25				
⑫1 세율		19				
⑫2 산출세액		20				
⑫3 감면세액		21				
⑫4 세액공제		22				
⑫5 차감세액(⑫2-⑫3-⑫4)		23				

2.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

⑫6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월		⑫7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※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⑩1란부터 ⑪8란까지, ⑫3란 및 ⑫4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, ⑪9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 부표]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또한,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의 ④7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'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'으로 '2'로 표기할 경우 ⑩1란부터 ⑪8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,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0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 이때 작성방법 1~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,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0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

※ 예 : 기능통화(USD), 적용환율(1,100원), 당기순이익(USD 2,000)일 경우 ⑩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'2,200,000' 으로 적습니다.

1. ②란 중 ⑫5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⑫2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2. ⑩4 조정 후 소득금액란: ②,③,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.
3. ③란 중 ⑩5 준비금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⑪6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, ⑩6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⑪7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⑪8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4. ④란 중 ⑩5 준비금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⑪6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, ⑩6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⑪7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⑪8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.
5. ②란과 ③란 중 ⑩8 기부금한도초과액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②2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6. ②란과 ③란 중 ⑩9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②6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③란 중 ⑪3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⑧ 금액란 중 ②0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8. ④란 중 ⑪3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②0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9. ③란 중 ⑪4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"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(별지 제6호의2서식)"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⑩1, ⑩2, ⑪7부터 ⑫0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0. ④란 중 ⑪4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"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(별지 제6호의2서식)"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⑩1, ⑩2, ⑪5부터 ⑪8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1. ③란 중 ⑪7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"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"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⑩8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2. ④란 중 ⑪7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"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"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⑩8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3. ③란 중 ⑫2 산출세액란: ⑪8란의 금액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②란 중 ⑫2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②란 중 ⑪9 선박표준이익이 ②란 중 ⑫0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※ 최저한세 세율

구분	중소기업 (유예기간 4년 포함)	유예기간 경과 후		일반기업		
		1~3년차	4~5년차	과표 1백억원 이하	과표 1백억원~1천억원 이하	과표 1천억원 초과
현행	7%	8%	9%	10%	12%	17%
종전	7%	8%	9%	10%	12%	16%

* 2014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

14. ②란 중 ⑫3 감면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"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15. ④란 중 ⑫3 감면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"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16. ②란 중 ⑫4 세액공제란: "세액공제조정명세서(3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"의 ⑪5란(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)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※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, 「법인세법」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17. ④란 중 ⑫4 세액공제란: "세액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"의 ⑪6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
18. ⑤란 중 ⑩5,⑩6,⑪3,⑪4,⑪7란은 각각 ④란 중 ⑩5,⑩6,⑪3,⑪4,⑪7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.
19. ⑤란 중 ⑫3,⑫4란은 각각 ②란 중 ⑫3,⑫4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⑫3,⑫4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20. ⑤란 중 ⑫5 차감세액은 ③란 중 ⑫2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21. ⑫6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(4년)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'사업연도 연월'과 같이 적습니다.

※ 예: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. 12. 31. 경우,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'2011. 12'로 적습니다.

22. ⑫7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⑫6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~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, 2, 3, 4,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23. ■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